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5743, 2005다75750(병합) 판결 [보증채무금 · 손해배상(기)]

---

## 참 조 조 문

민법 제2조, 제756조 제3항

##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5743, 2005다75750(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23911, 2005나23928 판결

##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한AAA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민A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A  
담당변호사 이BA)

【피고, 피상고인】 여CA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C 담당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1. 선고 2005나23911, 2005나23928(병합)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피용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 여C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 여CA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운(주심) 김영란